

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 2011-1 호

「도서관법」 제20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, 형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년 1월 3일
국립중앙도서관장

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, 형태에 관한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도서관법」 제20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,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"온라인 자료"란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9호의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종류)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웹사이트
2. 웹자료
 - 1) 문자자료(전자책, 전자저널, 학위논문, 보고서, 전자신문 등)
 - 2) 음성·음향자료(음악자료, 음성자료, 음향자료 등)
 - 3) 영상자료(방송, 영화, 공연, 이러닝자료 등)
 - 4) 이미지자료(사진, 회화 등)

제4조(형태)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.

1. ISO(국제표준화기구), KS(한국산업규격) 및 국내외 표준 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
2.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
3.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